

노동과 노르웨이를 넘어서*: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의 통합과 초국적 모빌리티

이 상 국**

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르웨이에 재정착한 미얀마 카렌족 난민을 사례로 삼아 재정착 난민의 통합과 모빌리티를 다룬다.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는 난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용은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수단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고용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다각적으로 전개한다. 국가는 자립한 난민은 성공 사례로, 그렇지 않은 난민은 문제 사례로 취급한다. 본 연구는 국가의 시선을 극복하며 재정착 난민의 통합이 일국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의 회복과 강화에 힘입어 초국적 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낸다. 노르웨이 등 유럽에 재정착 카렌족은 모빌리티를 실천하며 유럽이라는 공간을 사회생활의 장으로 삼고, 호혜성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가 혼용하고 관리하는 노동참여 중심의 통합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경로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본 연구는 밝힌다.

주제어: 노동, 노르웨이, 복지국가,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 통합, 모빌리티, 초국주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7195). 이 논문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준 강윤희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한다.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caskl@yonsei.ac.kr.

1. 서론

노르웨이 베르겐의 대표적인 지역 신문인 베르겐스 티덴데(*Bergens Tidende*)는 2021년 최우수 식당 후보로 다섯 곳을 선정했는데, 미얀마 카렌족 난민 출신인 래티(Lae htee, 1981년생)¹⁾가 운영하는 만달레이(Mandalay)라는 식당(스시 등 아시아 음식 전문)이 그 목록에 포함됐다.²⁾ 래티는 필자가 2000년에 태국-미얀마 국경 소재 난민촌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 주요 정보제공원으로 노르웨이 정부가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와 협력하여 추진한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Refugee Resettlement Program)의 수혜를 받아 2007년에 이곳에 정착했다. 래티의 식당이 지역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2018년 7월 필자가 직접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이미 경험했는데, 이번엔 지역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증해 준 셈이었다.

래티의 사례는 노르웨이 정부가 추진해온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재정착 난민의 지역 사회 정착과 통합(integration)을 촉진하려고 ‘안내 프로그램’(Introduction Program)을 운영해왔는데, 그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 중 하나가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였다. 그럼에도 이들의 고용률이 선주민의 그것보다 낮은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이들은 복지국가에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래티는 복지혜택에 의존하기는커녕 사업체를 운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도 내며 복지국가에 이바지하는 ‘좋은 시민’의 사례인 것이다.

그러나 래티의 ‘성공’을 노르웨이 사회 내 통합의 관점에서만 바

1) 본 논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 언론에 알려져 있으면 실명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명으로 표기한다.

2) <https://www.bt.no/kultur/bergensbeste/i/X8PQBx/bergens-beste-restaurant-dette-er-finalistene> (검색일: 2021.07.21).

라보면 한 면만을, 곧 일국주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단견에 빠질 수 있다. 래티는 노르웨이에 어머니와 동생들 넷과 함께 재정착 한 뒤, 난민촌에 홀로 남은 아버지를 만나러 태국에 해마다 방문하기도 하고, 캐나다에 재정착한 누나를 만나러 방문하기도 했다. 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뒤에는 노르웨이 선주민 동료와 함께 투자하여 스페인 말라가에 타운하우스를 구입하고, 해마다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그곳을 방문하고 있다. 래티로서는 노르웨이 정착과 자립과 통합은 모빌리티 능력의 회복과 초국적 여행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래티 등 노르웨이에 재정착한 미얀마 카렌족 난민을 사례로 삼아 재정착 난민의 통합과 모빌리티에 주목하고자 한다. 재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최종 목표는 앞서 언급했듯이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자립이었다. 노르웨이처럼 복지국가의 처지에서는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과 시스템을 지켜나가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이에 특화된 중앙정부 기구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용률 등을 통해 그 효과를 측정한다. 래티처럼 자립한 난민은 성공 사례로, 그렇지 않은 난민은 문제 사례로 취급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여러 시도들을 해나간다. 국가의 시선은 재정착 난민의 통합을 연구하는 관점에도 투사된다. 통합을 이해하려는 이론적인 틀 역시 일국 내 고용과 자립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의 통합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한다. 통합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의 폭력성 등 국가의 시선을 비판적으로 다룬 연구가 있으나(Abdelhady et al. 2020), 재정착 난민의 통합을 일국 내에서만 다루는 경향이 자못 강하다.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면서 재정착 난민의 통합이 일국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의 회복과 강화에 힘입어 초국적 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국주의/초지역주의 연구 실천과 모빌리티 연구 방법과 깊게 관련된 중단연구라 할 수 있다. 필자는 18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래티를 다시 만나며 그의 삶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었다. 그를 만나는 계기에 2018년 7월과 8월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외딴 지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재정착 난민들을 방문했다. 과거에는 동남아의 한 난민촌에 집중적으로 머물며 정주형 현지조사를 수행했다면, 이번에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자동차와 구글맵 등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하는 이동식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이처럼 재정착 난민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는 연구는 연구 관점과 연구 방법의 모빌리티 전환을 일으키는 계기로 작동했다.

2. 통합, 복지국가, 그리고 모빌리티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다루었던 통합 논의의 틀을 참조하되 모빌리티를 반영하여 그 틀을 확장하고자 한다. 통합(integration)이 국가와 연구자에게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90년대였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1970년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이민자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오히려 이민자들이 분리되고 주변화되어 보호 대상으로 머무르게 되자 1990년대 들어서 네덜란드를 필두로 시민 통합(civic integration)이라는 모델을 내세우며 이민자들의 주류 사회 참여를 독려했다(설동훈 외 2013; Borevi 2014). 수용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것을 지향하는 동화(assimilation)나 단순히 여러 문화의 공존을 용인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기는 하지만 통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념적으로 시민 통합을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교류에 초점을 두는 대안적 모델”(고상두 2012: 245)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작용이 아닌 수용국이 이민자에게 노동시장 참여 등을 요구하는 하나의 일방적 과정과 이민자들이 차별 금지

를 요구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일방적 과정의 조합이라는 비판도 있다 (설동훈 외 2013: 214).

유엔난민기구 차원에서도 유럽 국가들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이어 받아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2000년대 초반에 통합에 대한 틀을 개발하고 재정착 관련 당사국들에게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UNHCR 2013). 재정착 난민의 사례에서도 통합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지만(Sigona 2005), 이념적 차원에서 공유하는 바는 통합이 법적·경제적·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쌍방향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Ager et al. 2004; UNHCR 2013: 14). 에이저와 스트랭(Ager and Strang 2008)은 이를 체계적인 틀로 개발했다.³⁾

<그림 1> 통합의 핵심 영역에 대한 개념틀



출처: Ager and Strang 2008: 170

3) 필자의 논문(이상국 2019)에서 에이저와 스트랭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에이거와 스트랭이 제시한 이 틀은 재정착 난민의 통합을 추진하고 촉진하는 국가들의 정책 지향을 보여준다. 이 틀을 물에 떠 있는 배 모양의 구조물로 보면 해석하기가 쉽다. 수면 위에 드러나는 영역, 즉 눈으로 확인가능한 통합의 증표와 수단이 되는 것은 고용, 주거, 교육, 보건이다. 수용국가가 난민 통합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 영역들인 것이다. 고용률, 주택소유율, 진학률, 평균수명 등을 통해 이민자가 해당 사회에 어느 정도로 통합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 구조물을 맨 아래에서 떠받치는 것은 권리와 시민권이다. 이것은 난민들이 수용국 사회에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며 정당한 시민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재정착 난민들은 예전의 무국적 처지나 비호신청자 처지와 다를 바 없는 삶, 즉 소속이 결여되어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이 구조물의 양 끝단을 연결하는 부분이 사회적 연계와 촉진제이다. 사회적 연계를 구분하자면 사회적 유대는 난민공동체 내부의 관계, 사회적 가교는 난민공동체와 지역사회의 관계, 사회적 연결은 난민공동체와 정부기구 사이의 관계를 일컫는다(Ager and Strang 2008: 177; Putnam 1993). 사회적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촉진제로서 언어 능력과 문화적 지식을 갖추고 난민들이 일상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 틀을 종합하면 재정착 난민이 합법적 신분을 갖고서(토대), 언어와 문화적 지식과 안정감을 겸비하고(촉진제), 소속 공동체를 비롯해 지역사회, 수용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사회적 연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고, 건강하게 되면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노르웨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볼 때 이 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고용이다. 복지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수혜자를 불충분한 시민에서 완전한 시민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 누구나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보편성과 평등성이 북유럽 복지국가의 이념이 되었다(세예르스테드 2015: 123-124).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유럽 복지국가는 그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노동접근법’이 그 원리로 깊게 배어 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지구상에 있다는 매우 엄격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즉 의무와 노동권을 연결하여 북유럽 복지국가가 건설됐다(세예르스테드 2015: 466).⁴⁾ 따라서 보편성과 평등성 원리에 입각하여 누구나가 복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합의가 구성원들 사이에 있지만, 노동의 의무적 참여가 그 구성원들과 복지국가의 운영에 암묵적/명시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성/평등성과 노동이라는 두 축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이 상징적 친족 형성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노르웨이 민족주의의 핵심이 되었다(Gullestad 2002).

난민 등 이주민은 이러한 상상의 도덕 공동체와 이것의 현현인 복지국가에 딜레마와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Brochmann et al. 2012: 212-214; Gullestad 2002: 58). 복지국가의 입장에서는 보편성과 평등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지만, 이들은 노동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자들이었다. 선주민 입장에서는 이들은 ‘노르웨이인다움’에 위협을 가하며 ‘우리’가 성실하게 일궈온 복지국가를 남용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⁵⁾ 이러한 딜레마와 위협을 해결하려고 복지국가는 이들을 완전한 시민, 즉 복지 수혜도 받되, 노동의 의무도 성실하게 감당하여 복지국가에 이바지하는 ‘좋은 시민’으로 주조하는 정책을 가동한다(Olwig 2011).

4) 한나 아렌트(2017) 역시 노동을 작업과 행위와 더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조건으로 보았다.

5)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민의 25%가 이주민이 사회복지 시스템을 남용한다고 응답했다(Norwegian Ministries 2018: 87).

재정착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통합 프로그램은 훈육 권력이 인구를 관리해나가는 푸코의 통치성 로직의 전형을 보여준다 (Abdelhady et al. 2020; Foucault 1979).⁶⁾

노르웨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동참여와 복지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드러내며 재정착 난민들의 고용을 독려한다.

통합 정책의 성공은 이민자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일이다. 이것은 재정 지출과 수입의 균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노르웨이 복지 모델을 다함께 지탱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경제활동 인구가 일하지 않으면 이중의 손해가 발생하는데.....사회복지 비용도 증가하고 세수입도 줄어든다(Norwegian 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2013: 16).

이런 기초 아래에서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복지혜택만 받는 이주민들은 국가와 선주민 사회로부터 문제적인 사람들로 취급을 당하고 자연스레 수치심을 갖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Hagelund et al. 2010: 14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가는 일련의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의무를 강조해왔다. 그리하여 의무를 다하고 나서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Do your duty, claim your rights”라는 슬로건이 난민 등 이민자에게 도덕적 명령으로 자리 잡았다(Brochmann et al. 2013: 223).

그러나 재정착 난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필요에 맞는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전혀 낯선 언어인 노르웨이어를 단기간에 연마하여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어를 익혀도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업무 능력과 자격이 공식적

6) 푸코 통치성으로 복지국가의 기원과 그 사회적 효과를 다룬 국내 논문으로 김용현 (2019) 참조.

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래티는 난민촌에서 교사를 했지만 그 자격을 수용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교사로서 일하려고 한다면 노르웨이에서 요구하는 공식 교육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하는데, 동생들과 어머니를 부양해야하는 처지에서 긴 시간을 투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래티는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의 요리 능력을 재발견하고, 노르웨이어 구사 수준을 높이고, 선주민과도 관계를 발전시켜나가 식당을 창업하여 국가가 바라는 대로 노동의 의무도 완수하고, 국가의 세수입도 늘리는 데 이바지하면서 복지국가의 지속에 보탬이 되는 경로를 밟았지만, 이민자 대부분의 고용률이 선주민의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노동에 참여하는 영역도 이른바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Norwegian Ministries 2020: 79-80).

무엇보다 노동참여와 자립에 강조를 두고 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점은 어떤 구획된 영토(노르웨이)를 소우주처럼 취급하며 재정착 난민의 삶을 그 안에서만 바라보는 정주주의(sedentarism)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Malkki 1992). 그래서 래티처럼 성공 사례는 통합의 끝이라 취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통합에 이르는 도정으로 취급한다. 성공 사례든 그렇지 않은 노르웨이라는 구획된 영토를 통합이 이루어지는 최종 장으로 취급한다. 그 관점에서 보면 서론에 언급한 래티의 스페인 휴양지 여행과 난민촌 방문을 설명할 수 없고, 자동차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비롯해 유럽 대륙에 흩어진 동족을 만나러 이동하는 카렌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들에게 통합은 노르웨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에이거와 스트랭이 제시한 권리와 시민권이라는 안정된 토대를 통해 재정착 난민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초국적 여행에 필요한 문서를 취득한다. 고용 등 통합의 증표와 수단을 통해서 여행에 필요한 돈과 조건을 마련한다. 이들은 또한 사회적 연계(가교, 유대, 연결)와 촉진제(언어, 문화지식)를

국내 여행을 비롯해 유럽 내 이동과 역외 여행에 필요한 네트워크와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한다. 즉 통합의 여러 영역들이 일국 내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유럽과 그 바깥 세계까지 연결된다. 재정착 난민 저마다 노르웨이 사회 내 다른 통합의 도정에서 나름대로 모빌리티를 실천한다. 래티처럼 노르웨이 내 통합이 완성되어야만 모빌리티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호혜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 연계를 통해 모빌리티를 실천한다.

필자는 재정착 난민의 모빌리티 실천을 어리(2012; 2014), 크레스웰(2021), 애디(2019) 등 모빌리티 전환(mobility turn)을 주창하고 이를 연구의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학자들과 관련지으려고 한다.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사람과 사물의 특정 장소 간 이동패턴을 연구했던 전통적인 이동성 연구와 달리 사람, 사물, 아이디어, 정보, 이미지 등의 이동과 흐름,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과 하부구조, 그러한 이동에 내재된 정동과 경험, 그로 인한 이동 주체와 사회의 변화 등을 연계하여 탐색하는 학문적 접근이자 사유방식을 의미한다 (백일순 외 2020: 524).

어리(2014: 83)는 카스텔(2003)의 네트워크 논의를 참조하여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논한다. 카스텔(2003: 606)은 네트워크를 ‘상호 연관된 결절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네트워크 층위가 전자충격회로, 결절과 허브, 지배적인 관리 엘리트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어리와 카스텔에게 네트워크는 인터넷망과 같은 물질적인 것이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일컫기도 한다. 어리에게서 새로운 것은 카스텔과 퍼트남(Putnam 1993)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참조하여 네트워크를 일종의 자본으로 본 것이다. 어리(2014: 357)에 따르면 “네트워크 자본은, 반드시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감정적·

재정적·실제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의 사회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역량이다.” 이것은 재정착 난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고용만이 이들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역시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서는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네트워크는 모빌리티 수행을 통해, 즉 여행과 만남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되고 자본으로 전환된다. 여행과 만남은 시간과 돈, 노력 측면에서 비용이 들게 하지만, 네트워크의 확장과 강화, 공현존의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어리 2014: 391-392). 이렇게 모빌리티와 신기술이 결합하여 네트워크가 성장하면서 ‘공간과 공간이 연계되는’(interspatial) 사회생활의 장이 존재하고, 그곳에서는 네트워크 자본이 주요 자원으로 작동한다(어리 2014: 451). 어리의 논의를 적용해보면,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에 재정착한 카렌족은 모빌리티 실천을 통하여 (북)유럽이라는 공간을 사회생활의 장으로 삼고, 그곳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자본을 통해 일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국가가 훈육하고 관리하는 노동참여 중심의 통합과는 다른 경로의 통합을 추구해 나간다.

3. 노동시장 참여 중심의 노르웨이 난민 통합 정책의 발전

바이킹 시대(9세기-11세기) 노르웨이에서 주변의 유럽으로 인구가 퍼지기도 했지만, 노르웨이는 주변 나라들에서 난리를 피해 도망친 자들의 피난처이기도 했다. 1240년대 핀-우그르족 계통의 비야름(Bjarm)족이 몽골 침입을 받아 러시아 노브고로드(Novgorod)로부터 오늘날 사미(Sami)족⁷⁾이 거주하는 노르웨이 북부로 옮겨 왔다. 중세

7) 사미족은 핀-우그르족 계통으로 스칸디나비아 북부와 러시아 북부에 거주하는 원주민이다. 총 인구가 8만 명으로 추산되고 노르웨이에는 2018년 기준으로

와 근세에 스웨덴과 덴마크의 귀족들이 왕위 다툼에서 패하여 도망쳐 오기도 했고, 19세기에는 아일랜드 혁명과 폴란드 혁명에서 실패한 자들이 피난오기도 했다. 근현대시기에 규모가 큰 첫 번째 난민 집단은 1881년에 러시아 차르의 학정을 피해 도망쳐 온 유대인들이었고, 1900년까지 그 숫자가 642명에 이르렀다. 그 이후 1905년-1920년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혁명 상황을 피해 러시아인들이 노르웨이에 들어왔는데 그 규모는 500명 정도였다. 나치 독일을 피해온 난민들이 그 다음 대열을 이루었다. 1933년에 나치가 권력을 잡고 1935년 9월 뉘렌베르그법을 제정하여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사회생활을 금지하고, 1938년에 11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학살을 단행하는 등 1940년대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서 2천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노르웨이로 피신했다. 반나치 투쟁을 벌이던 정치인과 지식인들도 노르웨이로 피난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사가 훗날 독일의 수상이 된 빌리 브란트였다(Brochmann et al. 2008: 107-125).

하지만 노르웨이는 1960년대 말까지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더 큰 나라였다. 19세기 후반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노르웨이 인구 1/3이 북미로 이주했고, 1945년 이후에야 이 흐름이 잦아들었다(Eriksen 2013: 4).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입 이주민들도 적었다. 귀환한 노르웨이계 미국인, 동유럽과 중유럽 출신 난민들만 존재할 따름이었다. 북유럽출신 이주민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노르웨이에 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1967년에 들어서야 파키스탄과 중동계 노동 이주자 400여명이 들어왔고 그 이후 그 숫자가 증가했다(Brochmann et al. 2012: 149). 노동 이주자의 증가는 복지국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난민들은 노르웨이에 도착한 순간부터 국가의 지

55,600명가량 거주한다(Statistics Norway 2018).

<https://www.ssb.no/befolkning/artikler-og-publikasjoner/ingen-befolkningsvekst-i-samis-ke-omrader> 참조 (검색일: 2021.07.26).

원체계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적응해가고 있었지만, 노동 이주자들을 다루거나 지원하는 전문 국가 기구와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원리상 외국인 노동자도 복지국가에서 상당한 권리를 가져야 하나, 국민이 아닌 이들의 생활조건은 달랐고, 국가는 이에 대처하지 못했다. 노동 이주자들이 오슬로에 집거하면서 주거 부족 등 거주 환경이 열악해지고, 노르웨이 노동조합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그들의 협상 지위와 권리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자,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풀 유일한 방법으로 이민을 중단하고, 다른 한편으로 적절한 통합 정책을 마련하는 시도를 처음으로 하게 된다. 그리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정책에 편승하여 1975년에 이민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 과동과 경제 침체 여파로 이민 중단을 선언한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에서 석유가 발견되어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했으나 다른 보조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앞서 언급한 이민자의 열악한 환경과 노동조합 등 좌파의 입장이 이민 중단 의제를 장악하여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Brochmann et al. 2012: 159-162).

이민 중단이 선언되었으나 이민의 물결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전에 들어온 노동 이주자들이 돌아가지 않았고, 그들의 가족들이 노르웨이에 들어와 정착했다. 노르웨이 정부가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재정착 난민 수용은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이민 중단은 이민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와 채널을 통해서 이민 관리가 시작된 셈이었다. 그 관리의 핵심 원리는 이민자가 복지국가에 부담이 되지 않고,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스웨덴의 영향을 받아 1970년대에 통합 정책의 골격을 마련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르웨이어 교육과 직업 교육 등을 제공했다. 가족 재결합도 초청자의 일자리가 불확실하고 가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Brochmann et al. 2012: 163-171). 정부의 이민자 측정과 평가도 정교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80년에 발간되기 시작한 백서(White Paper)였다. 예컨대 1980년 백서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귀환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새로운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을 언급하며, 언어 교육 등 이들이 노르웨이 사회에 통합되는 데에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이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했다(Hagelund et al. 2010: 150; Kulbrandstad 2017).

난민 정책은 노동 이주자와 가족과 견줘 더 강력하게 복지국가의 개입이 발생하는 장이었다. 이민 중단 선언 이후 초청 노동자 유입이 가족 재결합을 제외하고 사라진 마당에서 사실상 노르웨이에 들어오는 신규 이민자 집단은 난민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 한정되었고, 정부의 이민 정책 역시 난민의 수용과 통합을 중심으로 개진되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임시로 필요에 따라 운영해오던 재정착 난민 수용이 1980년대 초부터는 연간 쿼터를 정하여 운영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International Catholic Migration Commission 2013: 217). 대상자 선정부터 도착,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교한 개입과 관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1980년대 초까지 난민들에 대한 책임은 복지국가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가 명목상 담당 부처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일은 대부분 자원조직이, 그리고 1953년 이후로는 국가와 자원조직이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의 준공공기관인 난민협의회(DNF, Norwegian Refugee Council)가 그 책임을 맡아 운영해왔다. 난민협의회는 1958년 난민들의 주거 문제를 담당하며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왔으나 1970년대 말 3천명의 베트남 ‘보트피플’이 밀어닥치고, 1980년대에 도 난민 이주가 계속되자 현 상태의 조직 체계와 자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초에 국가가 직접 난민의 수용과 정착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이 문제를 전체 이민자의 통합 정책 차원에서 다루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이어져 1988년에 오늘날에도 존속하는 이민청(UDI, Norwegian Directorate of Immigration)을 설립하게 된다. 이민청은 중앙정부의 조정기구로서 주거 마련, 고용허가 부여, 비호신청자 수용, 가족 재결합, 시민권 부여, 지역사회 정착, 통역 서비스 등 난민들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지고 관리해나갔다(Brochmann et al. 2012: 158-172).

이민청 설립은 국가가 규제(control)의 역할뿐만 아니라 통합(integration)을 책임지는 역할까지도 떠맡았음을 뜻했다. 즉 국가가 재정착 난민의 법적 지위와 일상생활까지도 포섭하는 전방위적인 행위자로 발전해나간 것이다. 규제는 중앙정부의 고유한 역할이지만 통합은 지역사회, 특히 지방정부의 참여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1980년대 지방정부의 참여에 대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 1990년대 보스니아 난민 사태를 계기로 난민들의 정착과 통합에 거의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을 안착시켰다. 이러한 난민 분산 정책은 오슬로 등 대도시에 난민이 집중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내 종족 집거지의 분리현상도 방지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Valenta et al. 2010: 474-475). 난민을 수용하는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일정 기간 통합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했다. 이제 재정착 난민의 통합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등 온 나라 관료제 기구가 동원된 것이다. 즉 재정착 난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료제를 앞장세워 전개하는 국가의 인구통치 프로젝트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됐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난민 통합 정책은 법제화, 전문화, 재개편의 과정을 거쳤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는 이민자

의 참여가 강조가 되는 시민 통합이라는 의제가 유럽의 이민 정책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때였다. 그리하여 노동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마련된 안내법(Introduction Act)을 2003년에 제정했다. 그 안내법은 18세에서 55세에 해당하는 모든 난민(재정착 난민, 비호신청자 중 난민 지위 받은 자, 가족들)이 지자체가 2년 동안 전일제로 운영하는 안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했다. 그 안내 프로그램에는 550시간의 언어 교육과 50시간의 사회문화 교육이 포함됐고, 난민 개인들의 특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훈련 교육이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개인은 2년 동안 노르웨이 국가보험체계의 기본공제금액(Basic Amount)의 두 배(25세 이하는 2/3)에 해당하는 소득 지원을 받는데, 2018년 기준으로 연간 187,268 크로네를 수령했다.⁸⁾ 해당 지자체 역시 안내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난민의 정착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5년 동안 지원받는데, 2018년 기준 난민당 804,100 크로네(5년 총액)를 받았다(UNHCR 2018: 15). 이처럼 안내법과 안내 프로그램은 복지 국가가 재정착 난민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수단이었다.

난민의 통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관료기구의 창립과 정부 조직의 재개편도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민청은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의 규제와 통합까지 다루어나갔으나, 노동시장 참여가 통합의 주요 현안이 되어가자 이 업무를 같이 다루어나가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그리하여 2006년 1월에 정착과 통합 업무를 이민청에서 분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통합·다양성청(IMDI, Norwegian Directorate of Integration and

8) 1 크로네(NOK)는 2021년 기준 약 130원이다. 노르웨이 기본공제금액에 관해서는 다음의 웹주소 참조. <https://www.ssb.no/en/klass/klassifikasjoner/43> (검색일: 2021. 07.28).

Diversity)을 설립했다(설동훈 외 2012: 171). 이로써 재정착 난민 선정, 난민 지위 부여 등 법적 규제에 관한 것은 이민청이, 언어 교육, 사회문화 프로그램, 직업 교육 등 안내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제반 정착 사항에 관한 것은 통합·다양성청이 책임지는 체계가 구축됐다. 이렇게 두 청을 분리하여 전문화 한 뒤 정부는 두 청을 노동·사회통합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아래 2009년까지 두었다. 이 부처는 이민과 통합 정책을 함께 다루는 막강한 부처로 부상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곧 이민과 통합을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을 뜻한다. 2009년 정부 부처의 개편이 이루어져 이민 규제 업무와 통합 업무는 다시 분리되어, 전자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아래, 후자는 아동·평등·사회통합부(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아래 두었고, 노동 이주는 노동·사회통합부 아래에 두었다(Brochmann et al. 2012: 209). 그 이후 여러 번 정부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이민청은 줄곧 법무 관련 부처⁹⁾ 아래 있었고, 통합·다양성청은 주관 부처의 변동으로 2018년부터 현재(2021년)까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에 소속되어 있다.¹⁰⁾ 주관 부처의 변화에서 보듯이 통합의 문제는 관점의 변화에 따라 평등의 문제이기도 하고 훈육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 목표는 재정착 난민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처럼 국가는 전문 관료기구의 창립과 정부 조직의 재개편을 단행하며 재정착 난민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갔다.

9) 2021년 기준으로 그 부처의 이름은 법무·공공안전부(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이다. <https://www.regjeringen.no/en/dep/jd/organisation/id487/> 참조 (검색일: 2021.07.28).

10) 교육·연구부 웹주소 참조. <https://www.regjeringen.no/en/dep/kd/id586/> (검색일: 2021.07.28).

4. 노동참여 압박 속에서 받는 ‘은혜’: 복지국가 안에서 살아가기

2019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이민자(765,108명)와 그 자녀들(179,294명)은 총 944,402명으로 전체 인구(533.8만 명)의 17.7%를 차지하고,¹¹⁾ 난민 배경(재정착 난민, 비호신청자 중 난민 지위 인정자, 가족 재결합)을 가진 사람은 233,794명으로, 이민자의 31%,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난민 배경 중 재정착 난민은 38,147명이고, 그중 미얀마인들은 총 2,666명이다(Statistics Norway 2020). 이 통계는 종족별로 구분하지 않는데, 래티 등 카렌족 난민 당사자에 따르면 카렌족은 1,5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표 1>에서 보듯이 중동계와 아프리카계가 재정착 난민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동남아출신으로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보트피플’로 들어온 베트남인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출신국별 노르웨이 거주 재정착 난민 인구(2019년 기준)

(단위: 명)

출신국	합계	남성	여성
총계	38,147	19,805	18,342
시리아	8,674	4,491	4,183
이란	5,502	3,001	2,501
베트남	3,724	2,152	1,572
이라크	3,570	2,055	1,515
미얀마	2,666	1,397	1,269
아프가니스탄	2,139	900	1,239
콩고	1,901	947	954
수단	871	397	474
에리트레아	749	336	413
소말리아	727	335	392

11) <https://www.ssb.no/en/statbank/table/09817/tableViewLayout1/> (검색일: 2021.07.30).

레바논	713	366	347
리비아	685	325	360
에티오피아	658	336	322
우간다	462	246	216
부룬디	407	202	205
기타	4,699	2,319	2,380

출처: Statistics Norway 2020: 19

미얀마 카렌족 처지에서 노르웨이 등 북유럽은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제일 편한 외국어인 영어를 사용하고 동족도 많이 나가 있는 미국, 호주, 캐나다를 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에 가는 데 수속 절차가 오래 걸리고, 마침 2000년대 중반 유엔난민기구의 주도 아래 북유럽 국가들이 미얀마 난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했기에 래티도 노르웨이로 마음을 정했다.

래티와 그 가족이 노르웨이에 재정착 난민 정책의 수혜를 받아 입국한 해인 2007년도는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가 통합 문제를 노동시장 참여와 연계하여 2003년 안내법을 제정하고, 2006년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통합·다양성청을 설립하고, 노동·사회통합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로 하여금 통합을 다루도록 하는 등 관료제 기구를 전문화하고 개편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래티처럼 대부분의 미얀마 카렌족 난민이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노르웨이에 들어왔기에 그러한 정책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표 2> 2005년-2012년 재정착 난민 주요 출신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출신국	명														
미얀마	274	미얀마	484	미얀마	710	미얀마	260	미얀마	326	에리트레아	308	에리트레아	415	에리트레아	252
콩고	259	콩고	203	콩고	318	이라크	158	부탄	300	미얀마	248	미얀마	155	아프가니스탄	203
부룬디	59	필리핀	107	이라크	73	부탄	149	팔레스타인	225	팔레스타인	151	아프가니스탄	156	미얀마	171
에티오피아	27	부룬디	50	스리랑카	37	에리트레아	76	에리트레아	121	이란	142	이란	144	소말리아	165
수단	22	베트남	47	베트남/필리핀	32	에티오피아	76	에티오피아	80	부탄	49	소말리아	185	이란	132

출처: Norwegian Ministries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표 2>에서 보듯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미얀마 출신 재정착 난민이 최다수를, 2010년-2011년에는 두 번째, 2012년에는 세 번째를 차지했다. 그 이후로는 미얀마의 민주화 시기¹²⁾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미얀마 출신의 재정착은 중단되었다. 노르웨이 정부로서는 노동시장 참여에 바탕을 둔 안내 프로그램 등 일련의 통합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데에 미얀마 카렌족이 그 성과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이었던 셈이다.

재정착 난민이 정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¹³⁾ 노르웨이로 출발하기 전에 래티 등 재정착 난민들은 태국에서 통합·다양성청성의 재정지원 아래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가 실시하는 사전 이해 교육인 노르웨이 문화소개 프로그램(NORCO, Norwegian Cultural Orientation Programme)을 이수했다. 15세 이상인 자들은 4일간 20시간을, 8세에서 14세 사이 아동들은 2일간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IOM은 난민들의 항공권 구매를

12) 2011년 민간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얀마의 민주화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 발발로 종식되었다.

13) 이하 내용은 UNHCR(2018)과 재정착 난민들 당사자와 면담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비롯해 출국과 입국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동행하며 책임을 진다. 여행에 따른 제반 경비는 이민청이 무상으로 지불한다.

재정착 난민들은 노르웨이 입국 전에 3년간 유효한 거주비자와 고용허가(Work Permit)를 이미 받고서 들어온다. 도착 후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 과거 3년 동안 7개월 이상 노르웨이 밖에 거주하지 않고, 법률상 추방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노르웨이 언어 교육(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그 자격 요건이다. 재정착 난민들은 최근 10년 동안 총 7년을 노르웨이에 거주했고, 노르웨이 언어 교육과 사회과목에 대한 이수와 더불어 기본적인 노르웨이 구사 능력 증빙을 제출하고 사회과목 시험에 통과했고, 범죄로 수감되거나 특별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Norwegian Ministries 2020: 95).¹⁴⁾ 현 시점(2021년)을 기준으로 카렌족 재정착 난민들은 대부분 노르웨이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되었으므로 시민권을 취득했다(Norwegian Ministries 2019: 86).

재정착 난민들은 노르웨이에 도착하자마자 통합·다양성청이 미리 협의해 둔 지역사회로 이동한다. 2019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전체 357 지자체 중 232 곳이 난민을 받아들였다(Norwegian Ministries 2020: 34). 해당 지자체는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5년 동안 정부 보조금(2018년 기준 총액 804,100 크로네)을 받으며 재정착 난민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안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난민들은 권리와 의무로서 2년 동안 재정지원(2018년 기준 연 187,268 크로네)을 받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50시간의 노르웨이어와 50시간의 사회 문화 교육을 받고 자신의 개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교육도 받는다.

래티도 베르겐의 지자체가 제공해주는 집에 살며 안내 프로그램

14) 노르웨이는 그간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국적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허용했다(Norwegian Ministries 2020: 96).

에 참여했다. 9개월이 지나 시간제근무로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 후 3개월이 지나 그 식당에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안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했고, 이수할 즈음인 2009년 1월에 노르웨이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무리가 없는 3단계(B1)에 이르렀다.¹⁵⁾ 그 후 래티는 통역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노르웨이 정부가 카렌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재정착시켰기에 그에 따라 통역 서비스가 많이 필요했다. 통역사로 일하는 동안 정착과 관련된 수많은 곳을 다녔고, 그 과정에서 노르웨이 사회 시스템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의 한 학교에서 계약제 모국어 교사로서 일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언어 능력도 더 키우게 됐고, 난민촌 시절에 가르쳤던 경험도 살려 정규직 교사가 되는 길을 알아봤으나 5년 과정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그 길은 포기했다.

자기 길을 찾고자 하는 래티의 모색은 계속되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노동시장 참여를 목표로 일련의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정착 난민이 이 과정을 거치면 마치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래티처럼 언어 능력과 소양 등을 갖춘 재정착 난민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래티는 2012년에 성인을 위한 예비대학교(Preuniversity) 2년 과정에 등록하여 본인에게 무엇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공부했다. 요리하는 것이 재밌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오후 3시 30분에서 밤 9시 30분까지는 예비대학교에서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나갔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시점에, 즉 노르웨이에 온 지 5년 차에 접어들 무렵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마침내 2013년 3월, 노르웨이에 도착한 지

15) 노르웨이어 수준은 초급부터 고급순으로 A1, A2, B1, B2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만 6년이 될 무렵 현재의 만달레이 식당을 창업했다.

래티의 창업은 일면 기업가 정신의 발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본국이나 난민촌에서 쌓았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정규직 교사의 길을 포기하며 찾은 대안이기도 했다.¹⁶⁾ 래티처럼 그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재정착 난민들은 청소 등 이른바 3D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비클러(Bykle)라는 비교적 외딴 곳에 재정착한 에클러와 그 남편인 폴레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그 부부는 미얀마 학생운동 세대인 ‘88세대’로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식인으로서 국경지역에서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 현재 비클러의 학교와 주변 도시인 홉덴(Hovden)의 스키 리조트에서 청소하는 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들어온 청소년 재정착 난민, 특히 여성 청소년은 예비대학교에서 간호사 과정을 거쳐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래티의 여동생인 도도와 에클러의 큰 딸인 투노가 그런 경우였다. 도도는 예비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베르겐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0년부터 일을 하고 있으나 현지말의 어감을 체득하는 데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한 예로 도도는 치료하는 환자에게 “자, 이제 손목 자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그 환자를 화들짝 놀라게 한 적이 있다. 투노의 경우 주중에는 홉덴의 태국 식당에서, 주말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이른바 투잡스의 삶을 살고 있다.

실직 중인 재정착 난민도 있다. 도도의 남편인 로니는 재능을 살려 래티의 만달레이 식당에서 요리사로 3여년 일했으나 여러 사정상 그만 두고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며 실업보험을 받고 있었다. 로니는 필자에게 노르웨이 생활의 무료함을 토로하며 그것을 달래려고 손수 맥주를 만들어 마시곤 한다고 했다. 당시(2018년 7월) 아직 30대

16) 난민과 비즈니스 창업 관련해서는 Lee(2018) 참조.

초반인 로니가 일을 하지 않고 실업보험에 의지하여 사는 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그리고 노르웨이 사회에서 수치스런 일로 여겨졌다. 외향적인 로니였지만 가족들 모임에서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했고, 노르웨이 현지인들이 자신을 하대하듯이 대하는 태도에 꽤 민감하게 반응했다. 로니는 2019년 8월에 직업학교에 등록하여 요리 전문 과정을 이수하다가 2019년 12월에 베르겐의 한 스시 식당에 요리사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노동참여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복지국가는 몸이 아픈 재정착 난민들을 충실히 돌보는 ‘은혜’를 제공했다. 에클러는 신장이식을 해야 할 정도로 신부전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신장이식을 기다리는 중에 그녀는 1주일에 세 번씩 정부에서 제공해준 차를 타고 크리스티안산(Kristiansand)에 있는 전문 병원으로 가서 투석을 받고 있었다. 마침내 2019년에는 신장이식까지 받았다. 치료와 이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무상이었다. 에클러의 가족은 그녀가 만약 미안마에 있었다면 그대로 죽었을 거라며 복지국가의 돌봄에 감사해했다.

베르겐에 거주하는 당시 50대 중반의 클로예는 몇 년 전에 중풍이 들었던 데다 그 사이 심장도 안 좋아져 인공 심장을 달고서 휠체어에 앉아 생활해야 했다. 클로예는 정부로부터 매월 17,000 크로네의 소득지원을 받고, 부인인 릴리는 남편을 재가 요양보호를 하며 매월 12,000 크로네를 급여로 받고 있었다. 여기에 18세 이하 자녀를 하나 두고 있어서 3,200 크로네의 자녀수당을 받고 있었다. 이 수입을 합치면 32,200 크로네(연 384,1000 크로네)인데, 여기에서 정부가 빌려준 주택융자금(2백5만 크로네)을 이자와 원리금 명목으로 7,200 크로네씩 갚고, 주택 관리비 명목으로 6,000 크로네를 내면, 17,200 크로네가 남는다. 릴리에 따르면 노르웨이 사람들의 수입¹⁷⁾에 미치지

17) 2018년 노르웨이 평균 가구 중위소득은 세전 연 666,000 크로네이다. 노르웨이 통계청(Statistics Norway) <https://www.ssb.no/en/statbank/table/06946/tableViewLayout>

못하지만, 레스토랑과 가라오케에 안가고, 술도 안마시므로 이 정도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아픈 남편에게도 수입이 보장되고, 자기가 바깥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생기는 것을 릴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난민 등 이민자들이 받는 이러한 혜택은 2010년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일상의 노르웨이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 주제였다. 무엇보다 2011년 7월 22일에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Anders Behring Breivik)이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노동당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로 오슬로 소재 정부 청사에 폭탄 테러를 감행하고, 곧바로 우퇴야(Utøya) 섬으로 이동하여 노동당 청년조직이 그곳에서 개최한 청소년 캠프에 총기를 난사하여 77명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은 노르웨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설동훈 외 2012). 이후 진행된 시리아 등 중동 난민 유입 사태는 노르웨이 선주민들로 하여금 복지국가와 이민자의 관계, 특히 복지국가를 남용하는 이민자의 문제를 일상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3년 이후 보수 정당 연합이 정권을 잡고 있다.

래티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만달레이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고, 노르웨이 선주민 단골손님들과 얘기를 나눌 때면 난민과 복지혜택의 문제가 늘 대화거리가 되었다. 필자가 방문한 당시에 래티는 그날 아침 식당에서 선주민 손님들과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래티에 따르면, 그 선주민은 노르웨이 조상들이 힘들게 기여해 만들어온 복지혜택을 난민들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받아만 간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래티는 선주민들이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러한 일상의 분위기 속에서 래티는 그 자신 복지혜택 남용자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식당 운영에 필요한 여러 법적 사안들을 다루는 일에 노르웨이 선주민

1/ 참조 (검색일: 2021.07.30).

여성을 고용하기까지 했다. 래티는 선주민 고용을 노르웨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기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선주민들로서는 래티의 사례가 난민이 현지 사회에 훌륭하게 적응하고 기여하는 귀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로니처럼 일하지 않는 난민들에게 수치심을 갖게 만들며 이들을 복지국가에 해를 가하는 문제 덩어리로 취급해 버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과거에도 정부가 해온 것이지만 난민 등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독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수 정권은 2017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고,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조직 재개편을 단행하며 통합·다양성청을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에 두었고, 노르웨이 언어 교육 등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통합 정책과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해나갔다(Norwegian Ministries 2019). 국가가 보기에는 고용이 ‘노르웨이’를 삶의 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난민의 통합에 이르는 수단이자 증표인 것이다. 그러나 난민이 보기에는 노르웨이에 살되 그곳을 딛고 만들어 내는 초국적 네트워크가 또 다른 삶의 장이자 수단이기도 했다.

5. 초국적 네트워크와 모빌리티

래티는 노르웨이에 온 지 2년이 지나 홀로 남은 아버지를 만나려고 난민촌을 방문했다. 그 후로도 거의 매년,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을 제외하고, 방문하고 있다. 래티처럼 제삼국에 재정착한 카렌족들은 남은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려고 난민촌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난민촌에 머물던 시절, 이들은 이동하는 데 제한을 많이 당했다. 태국법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이라서 인근 태국 마을이나 도

시에서 돌아다니거나 일할 때 단속에 걸려 난민촌으로 되돌려지곤 했다. 늘 경찰을 의식해야 했고 그들 눈에 띄지 않은 길로 이동해야 했다. 노르웨이에 오기 전 래티는 2003년에 난민촌에서 출발하여 인도 나갈랜드(Nagaland)까지 이르는 대장정을 육로로 이동하고 그곳의 한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뒤 2005년 다시 그 길을 되돌아 난민촌으로 돌아왔는데, 이 이동 경로에서 미얀마 당국의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주로 밤에 움직였다. 초국적 이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심한 제약이 따랐다. 제삼국에 재정착 하자 이들은 합법적 거주 신분(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하고 그에 따라 합법적 여행증명서도 발급 받게 되면서 이동성, 곧 여행 능력을 회복하거나 키울 수 있었다. 그 여행 능력을 활용하며 그들은 노르웨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자립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난민촌에 남은 가족을 돌아보는 삶을 실천한다. 그들에게 통합의 장은 노르웨이와 태국-미얀마 국경지역 난민촌이 연계된 장이다.

재정착 난민들의 초국적 이동은 고향(난민촌) 방문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카렌족 난민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에 이르는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노르웨이를 비롯해 미국, 호주, 캐나다에 흩어졌다. 그 와중에 한 국가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재정착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동고동락했던 친구들과 이웃들도 그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 래티의 가족은 후자에 해당되는 사례로서 누나(도도의 언니)와 그 가족은 캐나다에, 친구와 이웃과 친척들도 세계 여러 국가에 흩어졌다. 도도 가족(남편 로니, 딸 로라, 어머니)은 언니네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려고 2017년 8월에 캐나다를 방문했고, 그런 김에 카렌족이 최대 규모(1만 명)로 거주하고 있다는 미국 미네소타를 방문했다. 2019년 6월과 7월에도 도도와 로니와 로라는 래티와 함께 다시금 캐나다를 방문하며 초국적 네트워크와 사회생활을 유지해나갔다. 어리(2014: 391-

392)가 말하듯, 여행과 만남은 도도로 하여금 시간과 돈, 노력 측면에서 비용이 들게 했지만, 가족과 친구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켰고, 도도에게 공현존의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노르웨이와 캐나다 사이가 연계되는 사회생활의 장을 활성화시켰다. 실직 상태였던 로니로서는 삶의 터전이라는 노르웨이에서는 자립과 통합에 완전히 이르지 못한 자라는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끼곤 했지만,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여 초국적 사회생활의 장에 적극 참여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의 통합 정책만이 아니라 재정착 난민들이 만들어나가는 초국적 네트워크도 국내의 통합을 도모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표 3> 2006-2015* 국가별 미얀마 재정착 난민 규모¹⁸⁾

국 가 연 도	미국	호주	캐나 다	핀란 드	노르 웨이	뉴질 랜드	스웨 덴	네덜 란드	영국	아일 랜드	일본	덴마 크	기타	총계
2006	2,681	757	794	208	355	201	357	115	81	0	0	7	5	5,561
2007	10,436	1,520	1,611	383	460	158	212	96	111	97	0	9	9	15,102
2008	14,406	1,563	697	308	84	25	143	189	29	0	0	1	7	17,452
2009	13,033	2,332	874	240	297	116	134	27	5	0	0	11	10	17,079
2010	10,013	1,011	350	129	51	5	89	100	4	3	27	16	31	11,829
2011	8,137	794	82	179	13	171	21	108	0	2	18	4	14	9,543
2012	6,553	377	28	158	16	153	16	95	0	0	0	0	18	7,414
2013	7,553	919	81	137	27	104	1	75	1	0	18	9	89	9,014
2014	5,809	953	187	1	3	47	22	163	3	1	23	3	61	7,276
2015*	2,358	453	71	0	1	97	1	6	0	0	0	0	0	2,987
총계	80,979	10,679	4,775	1,743	1,307	1,077	996	974	234	103	86	60	244	103,257

*1-6월

출처: TBC(The Border Consortium) 2015: 10

18) 노르웨이에 재정착한 미얀마 난민과 관련하여 <표 3>에서 제시한 규모(1,307명)와 4장에서 언급한 규모(2,666명)가 다른 이유는 전자는 카렌족이 주로 거주하는 태국-미얀마 국경지역 위주로 조사한 것이고, 후자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버마족이 다수인 도시 난민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2015년부터 연 30명 규모로 재정착 난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카렌족 난민 86명을 받아들였다(채보근 2020).

<표 3>에서 보듯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 노르웨이 주변 국가에도 카렌족 난민이 재정착됐다. 시간이 흐르며 이들 국가에 사는 카렌들 사이의 연계가 확장되고 강화됐다.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자동차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어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가고 있다. 예컨대 필자는 오슬로에서 쉘투 목사 집에 머물렀는데 그는 자동차를 손수 운전하여 스웨덴에서 열리는 카렌족 기독교 행사에 참여하곤 했다. 쉘투 목사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행사까지도 자신의 자동차로 가는데, 그 경로를 보면 오슬로에서 자동차를 배에 실어 덴마크까지 간 뒤, 그곳에서 네덜란드까지 운전해서 간다고 한다. 필자는 현지조사 중에 이처럼 자동차로 여행을 다니는 카렌족 무리를 종종 마주하곤 했다. 특히 여름철 휴가 기간인 7월-8월에 자동차 여행이 주로 이루어졌다. 모빌리티 학자들(어리 2014: 209-249; Edensor 2004; Sheller 2004)이 주장하듯이, 자동차는 주체적인 시간성을 만들어내며 감각의 확장을 일으키고 새로운 장소감과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이동 실천을 통해 카렌족들은 (북)유럽을 사회생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며 카렌계 노르웨이인(Karen Norwegian)을 넘어서 카렌계 유럽인(Karen European)으로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해나간다.

래티는 유럽을 생활세계로 삼고 살아가고 유럽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장시켜나가는 극명한 사례였다. 래티는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안착시킨 뒤 1/3 지분을 갖고서 노르웨이 선주민과 함께 스페인의 지중해 휴양 도시 말라가에 타운하우스를 구입했다. 기독교인인 그는 성서의 무대가 되는 지중해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던 데다 스페인 문화도 좋아하고, 날씨도 좋아, 나중에 은퇴하면 그곳에서 보낼 계획도 갖고 있어서 그런 결정을 했다. 래티는 2014년부터 거의 매해 스페인 말라가를 방문하고 있다. 래티의 지경은 거기에서 더 확장되고 있다. 2019년 크리스마스를 말라가에서 보낸 뒤, 그 선주민과 함께

남미로 이동하여 2020년 1월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여행했다. 그러한 모빌리티 실천을 통해 래티는 노르웨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래의 자기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나간다.

카렌족의 모빌리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호혜성과 종교가 모빌리티를 작동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카렌족은 호텔이 아닌, 유럽에 흩어진 가족/친척/동료의 집에 신세를 지고 이를 노드로 삼아 이동한다. 여행은 호혜성의 순환 고리를 통해 이어지고 확장된다. 그 순환 고리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에까지도 이어진다. 예컨대 필자는 가족/친척/동료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노르웨이 여러 곳을 여행하고 있는 스웨덴 카렌족을 홉턴에서 만났는데, 그 가족은 곧 한국에 재정착돼 있는 카렌족 친척을 그 다음 달에 방문할 예정이었다. 필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오가는 경로에 위치한 스피더베르그(Spydeberg)의 한 카렌족 가족 집에 머무르는 동안 그 전해에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에서 온 카렌족 청년을 보기도 했다. 그 청년은 스웨덴에서 열린 유럽 카렌족 연합 행사에 참가한 계기에 노르웨이에 사는 카렌족 친구를 방문하던 차에 그 집에 머무른 것이다.

카렌족 네트워크는 곧 기독교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Horstmann 2011). 난민촌 시절에도 활발하게 가동되었던 이 네트워크는 카렌족이 재정착 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에서도 가동되고 있다. 2005년 7월에 설립된 노르웨이 카렌족 공동체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로서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카렌족 신년 행사 등 종족 전통 행사도 주도해나가고 있다. 앞서 쉘투 목사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 행사는 유럽 차원에서 연합 행사로 열리곤 해 카렌족 기독교인들은 일상적으로 국경을 넘곤 한다. 유럽에서도 주요 카렌족 종교 지도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스웨덴은 기독교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곧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연계를 강화

시키고 두 국가를 오가는 사람들의 이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더 나아가 유럽 카렌족 기독교 네트워크는 카렌족 디아스포라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태국-국경 지역,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과도 연계되어 가동된다. 이 기독교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심화될수록 초국적 모빌리티도 더 활발해진다.

이렇듯 모빌리티와 네트워크는 카렌족 재정착 난민이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 자기 삶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이동성 실천과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안정감 등 정서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돈과 정보와 물질이 오가며 생활의 필요를 채운다. 나아가 국경과 난민촌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활동도 전개하기도 한다. 특히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고향과 난민촌의 카렌족을 위한 모금 활동을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재정착 난민의 자립과 통합은 노르웨이에 한정되지 않고 고향과 난민촌이 연계된 초국적 장에서 동족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6. 결론

래티가 만달레이 식당이 최우수 후보 목록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SNS에 알리자 지역사회 선주민을 비롯해 미국 등 세계 여러 곳의 카렌족이 축하해주었다. 자신이 노력하여 이룬 것이 마침내 노르웨이 안팎에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필자로서도 2000년 난민촌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래티가 오늘날 이룬 성과를 보고 격세지감을 느꼈다.

래티의 성과는 일면 노르웨이 난민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난민촌에서 마땅한 신분 없이 기약 없는 세월을 살았

던 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고 살 거처와 공리를 선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일생을 책임지는 복지국가에 재정착한 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복지국가 입장에서 그 은혜는 시민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기여에 바탕을 둔 것이다. 누구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이라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 보편성과 노동 의무는 노르웨이인다움을 규정하고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로 작동한다(Brochmann et al. 2012; Gullestad 2002).

재정착 난민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들을 노르웨이인다운 시민으로 주조하기 위해 일련의 통합 정책을 운영한다. 1990년대 이래로 시민 통합은 선주민과 이민자 간의 상호교류를 모범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이민자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에이거와 스트랭(Ager and Strang 2008) 등 학자들도 그것을 통합의 주요한 증표이자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래티와 같은 사례는 성공으로, 그렇지 않은 사례는 문제로 취급하며 후자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가며 좋은 시민을 만들어나가는 푸코식 인구통치를 수행해나간다(Abdelhady et al. 2020; Foucault 1979).

본 연구는 그러한 방식으로 통합을 바라보면 정주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마치 재정착 난민들이 오로지 노르웨이만을 생활의 유일한 터전으로 삼고 그곳에서 일하고 자립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래티가 난민촌과 스페인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실직한 처지에서 캐나다를 방문했던 로니를 설명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래티의 경우는 성공의 효과가 일국 단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로니의 경우는 한 국가 내에서 통합이 더딜지라

도 초국적 모빌리티를 자원으로 삼아 정서의 안정은 물론 여러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결국 한 국가 내에서 통합에 이르는 수준과 정도가 다르더라도 재정착 난민은 모빌리티를 수행하며 초국적 생활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 연구는 드러냈다.

본 연구는 어리(2012; 2014) 등 모빌리티 전환을 주창하는 학자들의 논의에 기대어 재정착 난민들의 초국적 생활세계를 비추었다. 재정착 난민들은 수용국가에서 합법적 신분과 여행증명서를 획득하면서 여행 능력을 회복하고 확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들은 가족과 친척과 동료가 살고 있는 태국-미얀마 국경의 난민촌,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과 연계된 삶을 살아나갔다. 모빌리티 기술, 특히 자동차는 장소와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는 수단이 되어 노르웨이계 카렌족은 유럽계 카렌족이 돼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카렌족 재정착 난민의 모빌리티 수행에서 호혜성과 종교가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호혜성은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확장하는 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기독교는 연합 행사를 주도하며 여행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초국적 네트워크는 모빌리티 수행을 통해 이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본으로 전환되어 노르웨이 내에서도 통합에 순기능을 한다. 이것은 국가가 강조하고 훈육하고자 하는 노동과는 다른 자원으로 재정착 난민은 이것을 활용하며 노르웨이 내에서도 통합을 이루어나간다. 동시에 이들은 그 자원을 노르웨이를 넘어서 난민촌과 세계 곳곳에 흩어진 동족들과 상부상조하는 데 활용하며 또 다른 차원의 통합을 실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상두. 2012.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6(2): 241-264.
- 김용현. 2019. “푸코 통치성(gouvernementalité) 으로 본 복지국가의 기원과 그 사회적 효과.” 『사회복지정책』 46(3): 157-177.
- 백일순 · 정현주 · 홍승표. 2020. “모빌리티스 패러다임으로 본 개성공단: 새로운 모빌리티스 시스템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통근 버스가 만들어 낸 사회-공간.” 『대한지리학회지』 55(5): 521-540.
- 설동훈 · 이병하. 2012. “노르웨이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 『민족연구』 50: 163-180.
- _____. 2013.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 네덜란드의 이민자 통합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1): 207-238.
- 세예르스테드, 프랜시스. 유창훈 역. 2015.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파주: 글항아리.
- 아렌트, 한나. 이진우 역. 2017. 『인간의 조건』. 파주: 한길사.
- 애디, 피터. 최일만 역. 2019. 『모빌리티 이론』. 서울: 엘피.
- 어리, 존. 윤여일 역. 2012.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서울: 휴머니스트.
- 어리, 존. 강현수 · 이희상 역. 2014. 『모빌리티』. 서울: 아카넷.
- 이상국. 2019. “또 다른 경로의 통합: 호주의 재정착난민제도와 카렌족 난민들의 통합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52(2): 191-245.
- 채보근. 2020. 『우리나라 재정착난민의 사례연구 정책에 대한 고찰』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5): 53-82.
- 카스텔, 마누엘. 김묵한 · 박행웅 · 오은주 역. 2003. 『네트워크 사회

의 도래』. 서울: 한울.

크레스웰, 팀. 최영석 역. 2021. 『온 더 무브』. 서울: 엘피.

Abdelhady, Dalia, Nina Gren and Martin Joormann. 2020. *Refugees and the Violence of Welfare Bureaucracies in Northern Europ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Ager, Alastair and Alison Strang. 2004. *Indicators of Integration*.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_____. 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21(2): 166-191.

Borevi, Karin. 2014. "Multiculturalism and Welfare State Integration: Swedish Model Path Dependency." *Identities* 21(6): 708-723.

Brochmann, Grete and Anne Britt Djuve. 2013. "Multiculturalism or Assimilation? The Norwegian Welfare State Approach." P. Kivisto and O. Wahlbeck (eds.), *Debating Multiculturalism in the Nordic Welfare States*. London: Palgrave Macmillan. 219-245.

Brochmann, Grete and Anniken Hagelund. 2012. "Norway: The Land of the Golden Mean." G. Brochmann and A. Hagelund (eds.), *Immigration Policy and the Scandinavian Welfare State 1945-2010*. London: Palgrave Macmillan. 149-224.

Brochmann, Grete and Knut Kjeldstadli. 2008. *A History of Immigration: The Case of Norway 900-2000*. Oslo: Universitetsforlaget.

Edensor, Tim. 2004. "Automobility and National Identity: Representation, Geography and Driving Practice." *Theory, Culture & Society* 21(4/5): 101-120.

- Foucault, Michel. 1979. "Governmentality." *Ideology and Consciousness* 6: 5-21
- Gullestad, Marianne. 2002. "Invisible Fences: Egalitarianism, Nationalism and Racism."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8(1): 45-63.
- Hagelund, Anniken and Grete Brochmann. 2010. "From Rights to Duties? Welfare and Citizenship for Immigrants and Refugees in Scandinavia." P. Baert, S. M. Koniordos, G. Procacci and C. Ruzza (eds.), *Conflict, Citizenship and Civil Society*. London: Routledge. 141-160.
- Horstmann, Alexander. 2011. "Sacred Networks and Struggles among the Karen Baptists across the Thailand-Burma Border." *Moussons* 17(1): 85-104.
- International Catholic Migration Commission. 2013. *Welcome to Europe! A Comprehensive Guide to Resettlement*.
- Kulbrandstad, Lise Iversen. 2017. "Integration and Language Education in Norwegian Immigration Policy Documents 1980-2016." *Journal of Applied Language Studies* 11(3): 101-120.
- Lee, Sang Kook. 2018. "From Political Activists to Social Entrepreneurs: Burmese Refugees in South Korea." *Journal of Refugee Studies* 31(3): 371-389.
- Malkki, Liisa. 1992. "National Geographic: The Rooting of Peoples and the Territorialization of National Identity among Scholars and Refugees." *Cultural Anthropology* 7(1): 24-44.
- Norwegian Ministries. 2006. *International Migration 2005-2006*.
_____. 2007. *International Migration 2006-2007*.

- _____. 2008. *International Migration 2007-2008*.
- _____. 2009. *International Migration 2008-2009*.
- _____. 2010. *International Migration 2009-2010*.
- _____. 2011. *International Migration 2010-2011*.
- _____. 2012. *International Migration 2011-2012*.
- _____. 2013. *International Migration 2012-2013*.
- _____. 2018. *Immigration and Integration 2017-2018*.
- _____. 2019. *Immigration and Integration 2018-2019*.
- _____. 2020. *Immigration and Integration 2019-2020*.
- Norwegian 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2013. *A Comprehensive Integration Policy: Diversity and Community*.
- Olwig, Karen Fog. 2011. “‘Integration’: Migrants and Refugees between Scandinavian Welfare Societies and Family Relation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7(2): 179-196.
- Putnam, Robert.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 35-42.
- Sheller, Mimi. 2004. “Automotive Emotions: Feeling the Car.” *Theory, Culture and Society* 21(4/5): 221-242.
- Sigona, Nando. 2005. “Refugee Integration(s): Policy and Practice in the European Union.” *Refugee Survey Quarterly* 24(4): 115-122.
- Statistics Norway. 2018. *Sami Statistics 2018*.
- _____. 2020. *Overføringsflyktninger 2019*. (『재정착 2019』).
- The Border Consortium(TBC). 2015. *Annual Report: January-December 2015*. Bangkok: The Border Consortium.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2013. *A*

New Beginning: Refugee Integration in Europe.

_____. 2018. *Resettlement Handbook Norway Chapter.*

Valenta, Marko and Nihad Bunar. 2010. “State Assisted Integration: Refugee Integration Policies in Scandinavian Welfare States: The Swedish and Norwegian Experience.” *Journal of Refugee Studies* 23(4): 463-483.

<자료>

Bergens Tidende. “베르겐의 최우수 식당 목록.” <https://www.bt.no/kultur/bergensbeste/i/X8PQBx/bergens-beste-restaurant-dette-er-finalistene> (검색일: 2021.07.21).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홈페이지.” <https://www.regjeringen.no/en/dep/kd/id586/> (검색일: 2021.07.28)

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홈페이지.” <https://www.regjeringen.no/en/dep/jd/organisation/id487/>(검색일: 2021.07.28)

Statistics Norway. “기본공제금액 정보.” <https://www.ssb.no/en/klass/klassifikasjoner/43> (검색일: 2021.07.28)

_____. “사미족 관련 정보.” <https://www.ssb.no/befolkning/artikler-og-publikasjoner/ingen-befolkningsvekst-i-samiske-omrader> (검색일: 2021.07.26)

_____. “이민자 정보.” <https://www.ssb.no/en/statbank/table/09817/tableViewLayout1/>(검색일: 2021.07.30)

_____. “평균 중위소득.” <https://www.ssb.no/en/statbank/table/06946/tableViewLayout1/>(검색일: 2021.07.28)

(2021.09.28. 투고, 2021.10.22. 심사, 2021.11.06. 게재확정)

<Abstract>

Beyond Labor and Norway: The Integration and Transnational Mobility of Karen Refugees from Myanmar

LEE Sang Kook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integration and mobility of resettled refugees by taking Karen refugees from Myanmar having moved to Norway as an example. Norway, known as a welfare state, operates resettlement programs aimed at promoting refugee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self-reliance as a result. Since employment is a means of supporting the welfare state, various attempts are made at the national level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The state treats refugees who are self-reliant as a success, and refugees who are not as a problem. This study overcomes seeing like a state and reveals that the integration of resettled refugees is not limited to a particular country but takes place in transnational fields thanks to the recovery and strengthening of mobility. This study argues that Karen refugees in Norway and other parts of Europe have been developing another path of integration, practicing mobility, using Europe as their social space, and exploiting network capital based on reciprocity, which goes beyond the labor-centered integration that the state disciplines and manages.

82 동남아시아연구 31권 4호

Key Words: Labor, Norway, Welfare State, Myanmar, Karen,
Resettlement, Refugees, Integration, Mobility,
Transnationalism